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국토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제출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를 마칩

1. 의결주문

국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균형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초광역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초광역권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초광역권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초광역권계획의 수립에 관한 협의 및 조정 등을 위하여 초광역권계획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토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8829호, 2022. 2. 3.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광역권계획 수립 시의 고려사항과 초광역협력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초광역권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도록 하고, 초광역권계획위원회는 초광역권을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초광역권계획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초광역권을 구성하고자 하는 시·도지사 등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초광역권: 지역의 경제 및 생활권역의 발전에 필요한 연계·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한 권역(「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의2)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5. 10. ~ 6. 20., 2022. 6. 21. ~ 7. 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초광역권계획의 수립기준 및 작성방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초광역권계획이 국토종합계획에 부합하며, 지역의 경제와 생활권 발전에 관한 장단기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초광역권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해야 한다.

1. 국토종합계획 및 도종합계획과 초광역권계획의 관계
2. 초광역권계획의 기본사항과 수립절차
3. 초광역권계획 수립 시의 고려사항과 주요 항목
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0조의2에 따른 초광역협력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초광역권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초광역권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초광역권계획 수립주체(이하 “초광역권계획수립주체”)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 법 제12조의2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6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초광역권(이하 “초광역권”이라 한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재 육성전략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4조의3(초광역권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초광역권계획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초광역권계획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초광역권계획위원회 위원장은 초광역권계획위원회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초광역권계획수립주체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초광역권계획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초광역권계획수립주체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초광역권을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원
2. 초광역권을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초광역권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산업·교통·환경·문화·물류·정보통신·교육 등 초광역권계획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초광역권계획수립주체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⑥ 초광역권계획위원회 위원장은 초광역권계획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초광역권계획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⑦ 초광역권계획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초광역권계획위원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⑧ 초광역권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초광역권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초광역권을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부 칙

이 영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4조의2(초광역권계획의 수립기 준 및 작성방법) ①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초 광역권계획이 국토종합계획에 부합하며, 지역의 경제와 생활 권 발전에 관한 장단기 정책방 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초광역권계 획 수립지침을 작성해야 한다.</u> <u>1. 국토종합계획 및 도종합계획 과 초광역권계획의 관계</u> <u>2. 초광역권계획의 기본사항과 수립절차</u> <u>3. 초광역권계획 수립 시의 고 려사항과 주요 항목</u> <u>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 10조의2에 따른 초광역협력사 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u> <u>5. 그 밖에 초광역권계획의 수 립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u> <u>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초광역권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과 협의한 후 법 제12조</u>

<신 설>

의2제1항에 따른 초광역권계획 수립주체(이하 “초광역권계획 수립주체”)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 법 제12조의2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6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초광역권(이하 “초광역권”이라 한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재 육성전략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4조의3(초광역권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초광역권계획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초광역권계획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초광역권계획위원회 위원장은 초광역권계획위원회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초광역권계획수립주체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초광역권계획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초광역권계획수립주체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초광역권을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원

2. 초광역권을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초광역권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산업·교통·환경·문화·물류·정보통신·교육 등 초광역권계획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초광역권계획수립주체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초광역권계획위원회 위원장은 초광역권계획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초광역권계획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초광역권계획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초광역권계획위원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초광역권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초광역권계획위

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
체적인 사항은 초광역권을 구성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4952